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 등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공동 실시 근거 명확화(제5조)

다. 근로자 참여 및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구체화(제6조 및 제7조)

라.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정비(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결과의 근로자 공유 구체화(제17조)

바. 법령 개정 사항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기준에 반영(별표)

사. 고시 시행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에 관한 적용례, 인정사업장 사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4. 3.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4.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개정 2016. 3.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개정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개정 2020. 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개정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개정 2024. 1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전부개정 2026. 11.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요인의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 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해·위험 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위험성”이란 유해·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 작업과 관련된 도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단계에 해당 작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파악
2.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성 결정
3.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4.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확인

②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로 형태 등으로 인해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일부 근로자라도 직접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 (근로자대표 참여)

사업주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구체적인 참여 일정・범위・방법 등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수행 체계)

①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정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중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위험성평가 기법)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4. 핵심 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0조 (유해・위험 요인 파악)

① 사업주가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제20조의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 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선대책 수립·이행)

①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때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대책 방안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개선대책을 이행한 후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초평가)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최초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규칙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평가)

① 사업주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개선대책의 유효성 등

제15조(수시평가)

① 사업주는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② 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말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전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다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상시평가)

① 사업주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이행은 제14조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제6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여 해당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규칙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하고, 근로자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 공유)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통해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2. 설명회 개최
3. 사업장 게시
4. 문서 전달
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
6.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전달
7. 그 밖에 입증 가능한 명시적인 방법

② 사업주는 신규 채용, 작업 대상·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가 생기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실시규정)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 시기
4.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방법
5.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6. 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제20조 (사전조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사전조사 결과 및 작업계획서 등에 관한 정보
6.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7.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결과,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21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최소 보존 기한은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22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한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정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25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심사(이하 “현장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에 대하여 각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장(산재예방감독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산재예방감독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자
2.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간호법」 제5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고 안전·보건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6. 안전·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8.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5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이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23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한다.

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 사업장임을 인정받을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할 것
2.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3.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시설·인력·자금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을 것

제26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7조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① 공단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후점검일 기준 잔여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사후점검은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25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수립한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
5. 제27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
 가. 제25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29조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사업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실무 역량 지원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공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주로부터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광역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지원 신청 등)

① 제30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31조에 따른 컨설팅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교육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30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31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개선대책의 실행을 위해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재인정, 제28조에 따른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효기간 등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산재예방감독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산재예방감독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정한 감독·점검 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감독·점검으로 한정한다.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심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정사업장 사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인정 또는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이 인정받은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개정 2026.11.4>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1.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Ⅰ.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	10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	10
2. 교육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 담당자 교육 이수	30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
3. 예산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10
4. 재해예방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20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00**
1.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적정성 및 안전보건정보 수집·활용	5
2.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20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5
3.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대책 수립	15
	수립한 개선대책의 이행	25
4.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의 정기·수시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	10
5.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근로자 공유	20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40
2. 관리자(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30
3. 근로자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이해 수준	30
Ⅳ. 재해발생		**100**
재해발생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	100

2. 종합점수 산정 기준

항 목	배점	사업장 평가점수	가중치	환산 평가점수
Ⅰ. 사업주의 관심도	100	(a)	10%	a × 10% = A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00	(b)	60%	b × 60% = B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c)	25%	c × 25% = C
Ⅳ. 재해발생	100	(d)	5%	d × 5% = D
종합점수	A + B + C + D			

3. 감점 기준

인정신청 사업장에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점수에서 감점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한다.

감점항목	감점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한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1.4.>

위험성평가 []인정 []재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개월 5일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근로자 수(명)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억원) 및 공사기간]		근로자 상세내역	외국인 명 기간제・파견 명 고령(만55세 이상) 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신청인의 사업장에 사내 수급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재(건설업은 제외)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명)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명)
수급인 사업장	수급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처리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 **위험성평가 제도 연구용역 수행 기관**	▪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만족도 조사** ▪ **위험성평가 제도 연구 및 정책 반영**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 만족도 조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위험성평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인정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개선, 연구 및 정책 반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지
신청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11.4.>

인정번호: 제 호

위험성평가 인정서

1. 사업장명: ※ 건설공사는 현장명 기재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11.4.>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지원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교육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30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교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또는 ○○교육기관장 귀하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성명, 교육 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	**교육이수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 위험성평가 제도 연구용역 수행 기관	**▪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 위험성평가 제도 연구 및 정책 반영**	성명, 휴대전화번호	**교육이수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교육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개선, 연구 및 정책 반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교육 일정 선택	→	교육 참석	→	교육 이수 통보
신청인		신청인		교육 대상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11.4.>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개월 10일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근로자 수(명)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억원) 및 공사기간]		근로자 상세내역	외국인 명 기간제・파견 명 고령(만55세 이상) 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1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무 처리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 위험성평가 제도 연구용역 수행 기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위험성평가 제도 연구 및 정책 반영**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위험성평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개선, 연구 및 정책 반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일정 협의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 송부
신청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급번호: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참여연도 -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확인서

1. 사 업 장 명:
 (건설현장명)

2.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교 육 일 시: ○○○○.○○.○○ ~ ○○○○.○○.○○(○○시간)

위 사람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0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급번호: ○○(담)-참여연도-[]제조 []건설 []기타 -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 확인서

1. 사 업 장 명: (건설현장명)

2.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3. 소 재 지:

4. 이 수 자:

5. 교 육 일 시: ○○○○.○○.○○ ~ ○○○○.○○.○○(16시간)

위 사람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0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시간만큼「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교육기관장 직인